

◎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 - 315호

**2015년도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「보건의료 유망 신기술 연구개발」
대상과제 공고**

2015년도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「보건의료 유망 신기술 연구개발」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5월 21일

보건복지부장관

- 지원목적
 -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를 목표로 향후 기존의 보건의료기술 및 제품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유망 신기술(Killer Application) 발굴
 - 사업화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신규 첨단의료기술 분야를 발굴 및 지원하여 명확한 성과 창출 및 신산업으로 조기 안착을 유도

I. 지원내용

신규과제 지원규모 : 총 정부출연금 1,000백만원

대상사업

사업명		지 원 내 용
유망보건 의료기술	보건의료 유망 신기술 연구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기존 보건의료기술 및 제품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유망 신기술 (Killer Application)로서, '유망보건의료 신규사업 발굴 기준'에 적합한 제품화 가능한 기술■ (사전연구) 20백만원 이내, 2개월 이내 지원■ (본연구) 연간 330백만원 이내*, 6(3+3)년 이내 지원

※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,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지원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

* 단, 1차년도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290백만원 이내로 함

II. 연구기관 신청 자격

□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※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III. 신청요령

□ 신청절차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www.htdream.kr>)에서 연구 계획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
 - * 사업안내 > 관련서식 > 2015년도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「보건의료 유망 신기술 연구개발」 연구개발계획서(신청용)
- 제출서류(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)
 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접수
 - 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

□ 접수마감

○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

프로그램	전산입력 기한	계획서 제출	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(공문제출)
■ 보건의료 유망 신기술 연구개발	'15. 6. 22.(월), 18:00	'15. 6. 23.(화), 18:00	'15. 6. 23.(화), 18:00

※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(접수마감 시간 이후 수정 불가)
※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,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

○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&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〈 제출 및 연락처 〉

주 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
한국보건산업진흥원 R&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첨단의료지원팀(우 363-700)
대표전화 : 043-713-8542, 8113
F A X : 043-713-8910, 8911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」, 「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」,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,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 등

※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www.htdream.kr>) > 사업안내 > 관련법령 참조

V.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

□ 평가절차

- 연구계획서 접수('15. 6. 중) → 사전검토('15. 7. 초) → 사전연구 선정 (서면암맹)평가('15. 7. 중) →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('15. 7. 중) → 신규과제 확정('15. 7. 말) → 협약 체결('15. 7. 말) → 기획연구 수행 ('15. 8.~'15. 9. 말) → 본연구 선정(구두)평가('15. 10. 중)→ 예비선정 공고 및 과제 협약('15. 10. 말) → 본연구 연구 개시('15. 11. 초)

※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,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평가 및 협약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, 8월 1일자 사전연구개시 예정

□ 참여 및 신청제한

○ 참여제한

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고, 사전연구개시예정일('15. 8. 1.)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
-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
-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-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

○ 신청제한

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
-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-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·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(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)
-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‘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’의 심의를 실시
 - 예비선정대상과제는 ‘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’ 제출
 -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,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(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)
- 3천만원 이상(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)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‘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(<http://nfec.ntis.go.kr>)’에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

※ 세부사항은 “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” 참조

VI. 문의처

-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w.go.kr>)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www.htdream.kr>)을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&D진흥본부로 문의바람

<분야별 담당자 안내>

구분		담당자	연락처
유망보건의료기술	보건의료 유망 신기술 연구개발	차인준 (신기술개발단)	043-713-8542 ijcha4121@khidi.or.kr
		한정아 (신기술개발단)	043-713-8113 hahn6521@khidi.or.kr
전산입력사항 관련		배영신 (R&D정보관리팀)	043-713-8238 sin7382@khidi.or.kr
		김창민 (R&D정보관리팀)	043-713-8297 bulpae@khidi.or.kr